

제 1,391 호
1986. 2. 20

발행인: 서울특별시 김 용 래
 편집인: 공 책 관 서 장
 전 화: 731-6111-3
 인 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735-3337

시 보

차 례

| | |
|---|----|
| ◎ 조 례 | |
| 제 2255 호 : 서울특별시본청구청공무원교육원통의지방공무원인원조배증정조례 | 4 |
| 제 2256 호 : 서울특별시민보건의설치조례증정조례 | 6 |
| 제 2257 호 :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증정조례 | 7 |
| 제 2258 호 : 서울특별시전자저간소설치조례증정조례 | 7 |
| 제 2259 호 : 서울특별시중합운동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증정조례 | 3 |
| 제 2260 호 : 서울특별시방송통신위원회설치조례증정조례 | 8 |
| 제 2261 호 :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설치조례증정조례 | 9 |
| 제 2262 호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소설치조례증정조례 | 9 |
| 제 2263 호 : 서울특별시법률실설치조례증정조례 | 10 |
| 제 2264 호 : 서울특별시일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증정조례 | 10 |

(이면계속)

| | | | | | | | | | |
|---|--|--|--|--|--|--|--|--|--|
| 공 | | | | | | | | | |
| 할 | | | | | | | | | |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 |
|--|----|
| 제 2265 호 : 서울특별시립부니보호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 11 |
| 제 2266 호 : 서울특별시립마동상당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 11 |
| 제 2267 호 : 서울특별시립정소년사업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 | 11 |
| 제 2268 호 : 서울특별시공업시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 12 |
| 제 2269 호 : 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 12 |
| 제 2270 호 : 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 | 13 |
| 제 2271 호 : 서울특별시전설자재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 13 |
| 제 2272 호 : 서울특별시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 14 |
| 제 2273 호 : 서울특별시위생처리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 | 14 |
| 제 2274 호 : 서울특별시녹지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 15 |
| 제 2275 호 :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 15 |
| 제 2276 호 :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 15 |
| 제 2277 호 :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 16 |
| 제 2278 호 :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 16 |
| 제 2279 호 :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 17 |
| 제 2280 호 :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 17 |

㉔ 규 칙

| | |
|--------------------------------|----|
| 제 2231 호 : 서울특별시의회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 17 |
|--------------------------------|----|

㉕ 훈 령

| | |
|-----------------------------|----|
| 제 652 호 : 서울특별시시정발전추진제도운영규정 | 18 |
|-----------------------------|----|

㉖ 고 시

| | |
|-------------------------------|----|
| 제 84 호 :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시행허가 | 27 |
| 제 86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28 |

㉗ 구 고 시

| | |
|------------------------------|----|
| 서대문구제 4 호 :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변경 | 28 |
| 동작구제 3 호 :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허가 | 29 |

◎ 공 고

제 90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지표공람 29

제 91 호 : 제 2 중전기공사업책임영업정리처분 30

제 92 호 : 동문하수도사용개시및관측도면공람 30

제 94 호 : 도시계획사업시행 (도로) 무렵 35

◎ 사 령

◎ 공저사항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등의 지방공무원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8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㉔

◎서울특별시조례 제 2255 호

서울특별시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등의 지방공무원장정원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본청구청공무원교육원등의 지방공무원장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본청지방공무원장정원표 가. 일반직계중 기능직정원 "15"를 "126"으로 하고 정원내용에 "10 등급:운전원 111" 신설한다. 고용직정원 "381"을 "270"로 하고 정원내용중 "운전원 111"을 삭제한다.

(별표 1-2) 경찰국 지방공무원장정원표 기능직정원 "21"을 "70"으로 하고 정원내용에 " 10 등급:운전원 49"를 신설한다. 고용직정원 "305"를 "456"으로

하고 정원내용중 "운전원 49"를 삭제한다.

(별표 2) 구청지방공무원 장정원표를 별표와 같이 한다.

(별표 3) 공무원교육원지방공무원장정원표 기능직정원 "4"를 "10"으로 하고 정원내용중 10 등급 란에 "운전원 6"을 신설한다.

고용직정원 "62"를 "56"으로 하고 정원내용중 "운전원 6"을 삭제한다.

(별표 4) 농촌지도소 지방공무원장정원표 기능직정원 "1"을 "4"로 하고 정원내용에 " 10 등급:운전원 3"을 신설한다.

고용직정원 "18"을 "15"로 하고 정원내용중 "운전원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용직운전원의 기능직 10 등급 운전원으로의 변경은 1988.1.1 부터 적용한다.

| (별표) | | 구원지방공무원정원표 | |
|---------|--------|---|-----|
| 가. 일반회계 | | | |
| 직급 | 정원 | 정원 | 내 용 |
| 3 급 | 22 | 부이사관 22 | |
| 4 급 | 88 | 행정직 44, 행정 또는 시설직 44 | |
| 5 급 | 409 | 행정직 308, 행정토목 또는 지적직 22, 행정화공 또는 보건직 22, 행정 또는 임업직 22, 토목직 13, 건축직 22 | |
| 6 급 | 1,228 | 행정직 968, 행정화공 또는 보건직 44, 행정 또는 임업직 44, 행정농업 또는 축산직 4, 토목직 66, 건축직 44, 지적직 35, 전기직 22, 임업직 1 | |
| 7 급 | 1,511 | 행정직 1,001, 기계 또는 전기직 40, 화공직 17, 농업직 4, 임업직 40, 축산 또는 수의직 36, 보건직 45, 토목 또는 건축직 232, 지적직 36, 전기직 34, 환경직 26 | |
| 8 급 | 2,482 | 행정직 1,884, 기계 또는 전기직 49, 화공직 31, 농업직 4, 임업직 60, 축산직 2, 보건직 59, 토목 또는 건축직 306, 지적직 33, 전기직 4 | |
| 9 급 | 1,732 | 행정직 1,356, 기계 또는 전기직 18, 화공직 1, 농업직 1, 임업직 18, 축산직 6, 보건직 22, 토목 또는 건축직 212, 지적직 84, 전기직 14 | |
| 별정직 | 125 | 6 급상당 22 (민방위교육훈련담당) 7 급상당 84 (고압가스관리기사 22, 화성방요원 27, 사회복지전문요원 35) 8 급상당 19 (일반부녀상담원) | |
| 기능직 | 556 | 7 등급: 전기장 83, 기계장 19, 통신장 1 8 등급: 전기원 39 10 등급: 운전원 414 | |
| 교용직 | 1,904 | 타지원 241, 방호원 40, 행정보조원 119, 교환원 66, 전기보조원 325, 사정원 7, 기계보조원 83, 원예원 34, 감시원 505, 전달원 22, 매표원 9, 건물목안내원 10, 안내원 8, 사무원 373, 교도원 15, 관리원 23, 수도보조원 12, 사육원 1, 목공원 5 | |
| 합 계 | 10,057 | | |

| 나. 특별회계 | | |
|--|-------|--|
| 직 급 | 정 원 | 정 원 내 용 |
| 5 급 | 44 | 행정직 22, 토목직 22 |
| 6 급 | 132 | 행정직 66, 기계 또는 전기직 22, 토목직 44 |
| 7 급 | 192 | 행정직 99, 기계 또는 전기직 13, 토목 또는 건축직 41, 토목직 39 |
| 8 급 | 342 | 행정직 206, 기계 또는 전기직 6, 토목 또는 건축직 103, 토목직 27 |
| 9 급 | 435 | 행정직 373, 기계 또는 전기직 19, 토목 또는 건축직 43 |
| 기능직 | 62 | 7 등급: 전기장 24 10 등급: 운전원 38 |
| 고용직 | 823 | 타자원 42, 방호원 6, 전기보조원 21, 기계보조원 307, 수도보조원 425, 잡무원 22 |
| 합 계 | 2,930 | |
|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1988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시장 김용래 ⑤</p> <p>◎서울특별시조례 제 2256 호</p> <p>서울특별시립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립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p> | | <p>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중 별표와 같이 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다만, 고용직 운전원의 기능직 10등급 운전원으로의 변경은 1988.1.1부터 적용한다.</p> |
| (별표) | | 지 방 공 무 원 정 원 표 |
| 직 급 | 정 원 | 정 원 내 용 |
| 4 급 | 22 | 보건직 22 (단, 의사와 복수직) |
| 5 급 | 22 | 보건직 22 |

| 직 급 | 정 원 | 정 원 내 용 |
|-----|-------|---|
| 6 급 | 66 | 행정직 22, 보건의직 44 |
| 7 급 | 89 | 행정직 45, 보건의직 44 |
| 8 급 | 156 | 행정직 37, 보건의직 119 |
| 9 급 | 116 | 행정직 7, 보건의직 109 |
| 의료직 | 706 | 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 22 약사 89, 간호사 595 |
| 기능직 | 111 | 10 등급 : 운전원 111 |
| 교용직 | 210 | 방호원 30, 타자원 22, 방역원 68, 행정보조원 17, 장무원 34 전기보조원 7, 기계보조원 10, 전달원 22 |
| 합 계 | 1,498 | |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문 이에 공포한다.

1988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시장 김용래 ㉔

◎서울특별시조례 제 2257 호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서울시립대학교 지방공무원 정원표 기능직정원 "5"를 "9"로 하고 정원 내용에 "10 등급 : 운전원 4"를 신설한다.
교용직정원 "50"을 "45"으로 하

고 정원내용중 "운전원 4"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전자계산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문 이에 공포한다.

1988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시장 김용래 ㉔

◎서울특별시조례 제 2258 호

서울특별시전자계산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전자계산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 |
|---|---|----|---|
| <p>(별표) 전자계산소지방공무원정원표 별정 직관 다음에 기능직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 | | <p>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 |
| 직 | 급 | 정원 | 정원 내용 |
| 기능직 | 1 | 10 | 등급: 운전원 1 |
| <p>고상직정원 "2"를 "1"하고 정원내용중 "운전원 1"을 삭제한다.</p> | | | <p>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 |
| <p>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 | | | <p>1988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㉔</p> |
| <p>국무총리의 승인한 서울특별시 종합운동장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물 이에 공포한다.</p> | | | <p>1988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㉔</p> |
| <p>1988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㉔</p> | | | <p>◎서울특별시조례제 2260 호 서울특별시립운동장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운동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 기능직정원 "5"를 "7"로 하고 정원내용에 "10"등급: 운전원 2"를 신설한다. 고용직정원 "102"를 "100"으로 하고 정원내용중 "운전원 2"를 삭제한다.</p> |
| <p>◎서울특별시조례제 2259 호 서울특별시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 기능직정원 "16"를 "18"로하고 정원내용에 "19"등급: 운전원 2"를 신설한다. 고용직정원 "178"를 "176"으로하고 정원내용중 "운전원 2"를 삭제한다.</p> | | | <p>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 |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물
이에 공포한다.

1988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㉔

◎서울특별시조례제 2261 호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
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조례한다.

(별표) 세종문화회관지방공무원 정원표
기능직정원 "17"을 "20"으로 하고
정원내용에 "10 등급: 운전원 3"을
신설한다.

고용직정원 "172"를 "169"로하고 정
원내용중 "운전원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 부터 적용
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
물 이에 공포한다.

1988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㉔

◎서울특별시조례제 2262 호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소
시설시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보건환경연구소지방공무원정원
표 변경각란 다음에 기능직원공
음과 같이 신설한다.

| 계급별 | 정원 | 정원내용 |
|-----|----|--------------|
| 기능직 | 8 | 10 등급: 운전원 8 |

고용직정원 "20"을 "12"로하고 정
원내용중 "운전원 8"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
병원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물 이에 공포
한다.

1988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㉔

◎서울특별시조례 제 2263 호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 기능직정원 "10"을 "21"로 하고 정원내용에 "10 등급:운전원 11"을 신설한다.
 고용직 정원 "299"를 "288"로 하고 정원내용중 "운전원 1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 근로자 후생시설 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8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㉔

◎서울특별시조례 제 2264 호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1) 지방공무원정원표 가. 근로자회관 별정직란 다음에 기능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직 급 | 정 원 | 정 원 내 용 |
|--|-----|-------------|
| 기능직 | 1 | 10 등급:운전원 1 |
| 고용직정원 "13"을 "12"로 하고 정원내용중 "운전원 1"을 삭제한다. | | |
| 나. 부녀복지관 기능직정원 "2"를 "4"로 하고 정원내용에 "10 등급:운전원 2"를 신설한다. | | |
| 고용직정원 "37"을 "35"로 하고 정원내용중 "운전원 2"를 삭제한다. | | |
| 다. 근로청소년회관 별정직란 다음에 기능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직 급 | 정 원 | 정 원 내 용 |
|-----|-----|-------------|
| 기능직 | 2 | 10 등급:운전원 2 |

고용직정원 "30"을 "28"로 하고 정원내용중 "운전원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 부녀보호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8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㉔

◎서울특별시조례 제 2265 호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 부녀보호소 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 정원표 기능직
정원 "1"을 "2"로 하고 정원
내용에 "10"등급:운전원 1"을 신
설한다.
고용직정원 "16"을 "15"로 하고 정원
내용중 "운전원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립 아동상담소 설치조례중개정 조례물
이래 공포한다.

1988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서울특별시조례 제 2266 호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 설치조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 별정직
에 기능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직 급 | 정 원 | 정 원 내 용 |
|-----|-----|-------------|
| 기능직 | 2 | 10 등급:운전원 2 |

고용직정원 "13"을 "11"로하고 정
원내용중 "운전원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립 청소년사업관 설치조례중개정 조례
물 이래 공포한다.

1988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서울특별시조례 제 2267 호

서울특별시립청소년사업관
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사업관 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 별정직란
다음에 기능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직급별 | 정 원 | 정 원 내 용 |
|-----|-----|--------------|
| 기능직 | 1 | 10 등급: 운전원 1 |

고용직정원 "10"을 "9"로하고 정원내
용중 "운전원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제는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공업시험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물
이에 공포한다.

1988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268 호

서울특별시공업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공업시험소설치조례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 연구직란 다
음에 기능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직 급 | 정 원 | 정 원 내 용 |
|-----|-----|--------------|
| 기능직 | 2 | 10 등급: 운전원 2 |

고용직정원 "11"을 "9"로하고 정원
내용중 "운전원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제는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목동지구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
례물 이에 공포한다.

1988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269 호

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 별정직란 다
음에 기능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직 급 | 정 원 | 정 원 내 용 |
|-----|-----|--------------|
| 기능직 | 2 | 10 등급: 운전원 2 |

고용직정원 "11"을 "9"로하고 정원내용
중 "운전원 2"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제는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8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270 호

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종합건설본부 지방공무원정원표 가. 공사본부정원표 9급란 다음에 기능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계급 | 정원 | 명원내용 |
|-----|----|--------------|
| 기능직 | 7 | 10등급 : 운전원 7 |

고용직정원 "26"을 "19"로하고 정원내용중 "운전원 7"을 삭제한다.
나. 지원사업소 정원표 기능직정원 "220"을 "223"으로하고 건설사업소란에 "10등급 : 운전원 2" 및 건설자재 사업소란에 "10등급 : 운전원 1"을 각각 신설한다.
고용직정원 "110"을 "107"로하고 건설사업소란에 "운전원 2" 및 건설자재사업소란에 "운전원 1"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건설자재시험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8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271 호

서울특별시건설자재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건설자재시험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 9급란 다음에 기능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계급 | 정원 | 정원내용 |
|-----|----|--------------|
| 기능직 | 3 | 10등급 : 운전원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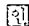
고용직 정원 "12"을 "9"로하고 정원내용중 "운전원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난지도 쓰레기 종합처리사업소 설치조
배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8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서울특별시조례 제 2272 호

서울특별시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
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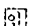
서울특별시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 기능직정원
"55"를 "56"으로하고 정원내용에
"10 등급:운전원 1"을 신설한다.
고용직정원 "12"를 "11"로하고
정원내용중 "운전원 1"을 삭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위생처리장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1988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서울특별시조례 제 2273 호

서울특별시위생처리장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위생처리장설치조례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생처리장 지방공무원정원표
기능직정원 "24"를 "26"으로하고
정원내용중 "10 등급:운전원 2"
를 신설한다.
고용직정원 "33"을 "31"로하고
정원내용중 "운전원 2"를 삭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축거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1988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서울특별시조례제 2274 호

서울특별시녹지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녹지사업소설치조례중 다
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녹지사업소 지방공무원정원표
9급란 다음에 기능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직 급 | 정 원 | 정 원 내 용 |
|-----|-----|---------------|
| 기능직 | 3 | 10 등급 : 운전원 3 |

고용직정원 "39"를 "31"로하고 성
원내용중 "운전원 8"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8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275 호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 기능직정원
"1"을 "6"으로하고 정원내용에
"10 등급: 운전원 5"를 신설한다.
고용직정원 "81"을 "76"으로 하
고 정원내용중 "운전원 5"를 삭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8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276 호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 설
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 | |
|---|-------------------------|---|---|------------------------|
| (별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지상공 무원정원표 별정직란 다음에 기능직 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직 급 기능직 | 정 원 3 | 정 원 내 용 10 등급:윤전원 3 |
| 계급별 정 원 기능직 10 | 정 원 내 용 10 등급:윤전원 10 | | 고용직정원 "67"을 "64"로 하고 정 원내용중 "윤전원 3"을 삭제한다. | |
| 고용직장원 "219"를 "209"로 하고 정원내용중 "윤전원 10"을 삭제한다. | |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 |
|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 차량정비사업소 설치조례중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 |
|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 자동차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중개 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 1988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 | |
| ◎ 서울특별시조례제 2277 호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소설치조 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자동차관리사업소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정직란 다음에 기능직란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서울특별시조례제 2278 호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사업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사업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 기능직정원 "85" 를 "87"로 하고 정원내용중 "10 등급:윤전원 2"를 신설한다. 고용직정원 "65"를 "63"으로하고 정원내용중 "윤전원 2"를 삭제한다. | | |
| | |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 |

국민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8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 서울특별시조례제 2279 호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설치 조례중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한강관리사업소 지방공무원정원표 기능직정원 "287"을 "313"으로 하고 정원내용량에 "10등급: 운전원 26"을 신설한다.

고용직정원 "430"을 "404"로 하고 정원내용량 "운전원 26"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국민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설치 조례중개정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1988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 서울특별시조례제 2280 호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수도사업소 지방공무원정원표 기능직정원 "80"을 "126"으로 하고 정원내용량 "10 등급: 운전원 46"을 신설한다.

고용직정원 "875"를 "829"로 하고 정원내용량 "운전원 46"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구의사무분장 규칙중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8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 서울특별시규칙제 2211호

서울특별시의 구사무분장규칙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의 구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 제1항중 "강남구"를 "강남구 및 서초구"로 한다.

제21조 제1항에서 제3항중 "강남구"를 "강남구 및 서초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 시정발전추진제도 운영규정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8년 2월 9일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인

◎ 서울특별시훈령제 652호

서울특별시 시정발전 추진제도 운영규정 (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일선공무원의 유용한 현장경험과 영구를 통한 창의적인 착상 (참신한 아이디어)을 최대한 수렴 장려 개발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로서 공무원의 사기양양과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과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 증진등을 위하여 착상의 제출 심사 채택 시상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주봉사 행정구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착상제안대상) ①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따라 시산하공무원이 개인 별 또는 공동으로 시정발전에 관한 착상을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민화합과 지역안정
2. 시민복지와 생활편익 증진
3. 지역개발 및 소득증대
4. 문화상달과 애한심 함양
5.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
6.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
7.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능력발전
8. 기타 행정제도 및 운영개선등 시정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②이 규정이 의하여 제출할 수 있는 착상사항은 창의적인 의견은 물론 선진사회를 보완하거나 도입하는 경우와 문제의 제기 및 소재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3 조 (착상으로 볼수없는것) 다음

각항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착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통용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것
2. 공무원 제안 규정에 의하여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것
3.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것
4.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경,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것
5. 법령개정사항이거나 기타 착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것

제 4 조 (제안자의 사권) ① 서울특별시 산하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착상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공동으로 착상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각각의 업무분담 및 착상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으로 제출하게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2 장 제 출 및 결 수

제 5 조 (착상안의 제출) ① 서울특별시 산하의 모든공무원은 이규정이 정하는 약에 따라서 년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자유로 선정한다

다만, 시의성 있는 시책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권부서에서 과제를 지정 공고할 수도 있다.

②착상의 제출은 별지식식1의 착상 제출서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 착상자에게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 (제출준비과제 의한 지원) 시 산하기관의 장은 시경합전역 관한 착상을 제출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출준비과제 대하여는 각종통계자료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7 조 (작성안의 접수) ① 제 5 조의 작성서를 접수할 때는 별지서식 2의 수대장에 기록하고 별지서식 3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작상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한 것이 우선한다.

제 3 장 착상심사위원회의

제 8 조 (설치) 이 규정에 의한 착상의 심사, 채택, 시상, 실시명기, 상여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착상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9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 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 부위원장은 시정연구관이 되고 위원은 심사대상 착상안건과 관계되는 과장급 및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착상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소위원회 (제강급)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 10 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1 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착상의 심사채택
2. 착상의 실시범위, 실시기관 및 평가의 기준과 방법
3. 착상의 실시 평가 및 보고
4. 상여금의 지급 결정

제 12 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13 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시정개발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시정개발담당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4 장 심 사

제 14 조 (심사) ① 위원회는 착상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착상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별지서식 6)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실무소위원회에서 착상으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부채택 처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착상안을 분기별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 | | |
|--|--|----------------|
| <p>경우 수시심사 할 수 있다.</p> <p>제 15 조 (착상심사기준) 제출된 착상안에 대하여는 창의성, 경제성 또는 기술성, 실용성, 적용범위, 지속성을 기준으로 하고, 심사결과 중점이 있을 때에는 노력도와 완성도를 참작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채택안에 포함시킨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시상 예산이 부가되더라도 주민편익 및 신뢰 획득 효과가 있는 경우 2. 사소한 착상이라도 실시효과가 있는 경우 3. 현재는 실시하기 곤란하더라도 잠재성이 있는 경우 4. 지역적 특성에 따라 유용성이 인정되는 경우 5. 직무상 제도개선 사항 등 | <p>제 16 조 (채택여부 결정 동지) 착상의 채택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택된 착상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착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별지서식 7에 의하여 당해 착상의 주무부서장에게 그 실시를 지시한다. 2. 채택되지 아니한 착상은 그 사유를 별지서식 8에 의하여 착상제출자에게 통지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장 시 상</p> <p>제 17 조 (채택등급) 착상의 채택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및 참여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착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p> <p>제 18 조 (시상 및 부상금) ① 채택된 착상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시상한다.</p> | |
| <p>상 별</p> | <p>부 상 금</p> | <p>표 장</p> |
| <p>금 상</p> | <p>250 만원이상 500 만원미만</p> | <p>시 장 표 장</p> |
| <p>은 상</p> | <p>150 만원 " 250 만원 "</p> | <p>"</p> |
| <p>동 상</p> | <p>50 만원 " 150 만원 "</p> | <p>"</p> |
| <p>장 려 상</p> | <p>30 만원 " 50 만원 "</p> | <p>"</p> |
| <p>노 려 상</p> | <p>10 만원 " 30 만원 "</p> | <p>"</p> |
| <p>참 여 상</p> | <p>5 만원 " 20 만원 "</p> | <p>"</p> |

| | |
|---|--|
| <p>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을 받을 수 있는 착상이 2 일이상의 공동착상일 경우에는 균분지급한다.</p> <p>③채택되지 아니한 착상이라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착상제출자에게 참여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p> <p>제 19 조 (상여금 지급) ①착상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상의 결과 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지급에 관한 기준은 서울특별시공무원 제안규칙을 준용한다.</p> <p>제 20 조 (인사상 특전) 채택착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조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승진 심사시 직급 참작 2. 인사고과, 평정자료 반영 (근무성적 평정서 창의력란 만점) 3. 각종 포상, 표창추천시 우선권 부여 등 |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장 보 칙</p> <p>제 21 조 (착안의 사무관리) ①이 규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상의 실시를 지시받은 부서의 장은 별지 서식 4 의 착상관리 기록부를 비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재없이 이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사항 및 효과를 보고하여야 한다.</p> <p>②착상 채택자의 개인별 실적의 누적관리가 가능하도록 기관단위트 서식 5 의 개인별 착상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p> <p>제 22 조 (제안규정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을 준용한다.</p> <p>제 23 조 (홍보)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착상제도의 운영방법과 채택된 착상의 실시 상황은 시보 또는 기타 간행물을 통하여 홍보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
|---|--|

| | | |
|------------------------|---|-------|
| 별지서식 1 (내면) | | |
| <u>작 상 적 출 서</u> | | |
| 제안자 | 소속 | 직급 성명 |
| 전명 | | |
| 제안요지 | | |
| 개선내용 (내용이 많으면 별지사용) | 현행 | 개선안 |
| | | |
| 심사결과 | | |
| 별지서식 1 (외면) |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우편 봉합 열서</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보내는사람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우 표 (80원)</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p> <p>받는사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p> <p>서울특별시 시청개발담당관</p> <p>(시정발전 착상)</p> <p style="text-align: center;">□ □ □ □ □ □</p> </div> | |

| | | | | | | | |
|---|----------|---------|---------|---------|--------|--------|---|
| 별표서식 4 | | | | | | | |
| 착상관리기록부 NI | | | | | | | |
| 책 | 년 | 도 | 년(재회) | 작 | 성 | 기 | |
| 착상 제목 | | | | | | | |
| 착 상 자 | 성 명 | | 직 | 급 | 주민등록번호 | | |
| | 착상당사 소속 | | 원소속 | | | | |
| 착 상 사 상 | 착상책명 및 | 책책임자 | 책책등급 | 부 | 상 | 금 | |
| | 기 다 | | | | | | |
| 착 상 실 시 문 재 점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실시예검() | 일시불가() | | | |
| | 수 | 정 | 보 | 안 | 내 | 용 | |
| | (실험연구 등) | | 실 | 험 | 연 | 구 | 기 |
| 접는선 | | | | | | | |
| 착 상 의 실 시 효 과 | 기 | 간 | 예산결감액 | 조 | 세 | 수입증대액 | |
| | | | | | 행 | 정 | |
| 비고 | | | | | | | |
| 별지서식 5 | | | | | | | |
| 개인별착상카드 NI | | | | | | | |
| 착 상 자 | 성 명 | | (한문) | | 주민등록번호 | | |
| | 소 | 속 | (별동일자) | | 직 | (별동일자) | |
| | | | (별동일자) | | | (별동일자) | |
| | | | (별동일자) | | | (별동일자) | |
| (별동일자) | | | (별동일자) | | | | |
| 착 상 사 황 | 책 | 책 | 책 | 책 | 부 | 비 | |
| | 책 | 책 | 책 | 책 | 부 | 비 | |
| | 책 | 책 | 책 | 책 | 부 | 비 | |
| | 책 | 책 | 책 | 책 | 부 | 비 | |
| 기타 | | | | | | | |

(별지서식 6)

서울특별시

(731-6151)

분류번호

198 년 월 일

수신

제목 착상에 대한 의견조회

1. 서울특별시 시정발전 착상제도 운영규정(훈령제 호)에 의하여 제출된 착상에 대하여 등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귀기관(실·국·과)의 의견을 참고코져하니 1988 년 월 일까지 회보할것.

첨부 착상서 1부. 끝.

서울특별시장

(별지서식 7)

서울특별시

(731-6151)

분류번호

198 년 월 일

수신

제목 착상실시 지시

1. 아래 착상은 착상실의위원회 의 심의결과 시정에 반영키로 결정되었으니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 및 실시효과를 보고하기 바랍.

가. 착상의 제목

나. 착상내용(별첨)

다. 착상자 소속 직 성명

라. 채택등급

첨부 착상서 1부. 끝.

서울특별시장

(별지서식 8)

서울특별시

(731-6151)

분류번호

198 년 월 일

수신

제목 착상심사결과 통보

1. 아래 착상은 착상심의위원회에서 불 채택되어 통지하니 양지하기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시장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착상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착상접수번호 :

나. 착상제목 :

다. 불 채택 사유 :

서울특별시장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84 호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허가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75 호(78.6.12)로 사업결정 및 동고시 제 411 호(78.8.14)로 지적승인되고 동공고 736 호(87.11.30)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한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8.2.10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서대문구 홍은동

346-3,5 번지

나.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명칭: 신진운수(주)기숙사일부

다. 사업의규모:

1) 시행면적: 1,795 ㎡

2) 건축면적: 168.3 ㎡

3) 연면적: 384.6 ㎡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244-1

신진운수(주) 대표: 이병훈

마. 사업기간: '88.2 - '88.10.30

바. 수용할 토지 및 건물: 없음

사. 허가도서: 별첨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86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 촉진법 제 33 조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5 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8.2.10.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민영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서대문구 면목동 91-65
우성주택건설산업 양판국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편적,
규모
가. 위치: 도봉구 방학동 263-56 외
3필지
나. 면적: 2,766㎡
다. 규모: 연립 3층 2동: 54세대
연립 2층 1동: 6세대
4. 사업시행기간: '88.2 - '88.12

구 고 시

◎서대문구고시제 4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변경

1. 서대문구 고시 제 22 호 ('87.6.11)
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 허
가된 서울의국인학교에 대하여 도
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와 서울특별시 조례 제 2125
호 ('86.12.18)에 의거 아래와 같
이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 도시정비과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인다.

1988.2.10.

서대문구청장

* 허가내용

- 가. 사업시행지: 서대문구 연희동
55-1 일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 서울의
국인학교 교사증축
- 다. 사업의 규모
 - 사업시행면적: 54,800㎡
 - 건물연면적: 기존 19,760.24㎡,
금회 3,271.11㎡ (증 514.31㎡)
지 23,021.35㎡

라. 사업시행자: 서대문구 연희동 55
 재단법인 서울의국인학교 유지재단
 대표이사 고일선
 마. 사업의 준공예정일: '88.12.30
 바. 수용할 토지: 없음
 아. 허가도서: 별첨 (생략)

◎동작구고시제 3 호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772 호 ('87. 11.3) 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시장)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5 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을 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도시정비과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8.2.10.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시행지
 동작구 사당동 136-1 의 3 필지
 나. 사업개요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
 사업 (시장), 사당소광센터
 다.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동작구 사당동 135-1
 경유산업㈜ 오준경
 라. 사업시행규모: 대지면적 3,518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일: 허가일로부터 30 일 이내
 ○ 준공일: 1989.12.31
 바.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및 소유권이득의 권리명세: 별첨 (생략)
 사. 위치 및 경면도: 별첨 (생략)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90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

1. 서울특별시가 결정지적 승인한 다음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한다.

1988.2.10.

서울특별시 장

| 사업시행지 | 사업종류 및 사업명칭 | 규모 | 착공 | 준공 | 결정고시 일자 | 지적고시 일자 |
|-------------------------|---|---------------------|--------|-------|-------------------------------|-------------------------------|
| 월계동 471-6 의 14 필지 | 도시계획사업(도로) 월계동 471-467 (신곡주교)간 도로 포장공사 | B=8-10 m L=320 m | '87.12 | '88.5 | 서고시 제 60 호 ('74.5.11) | 적고시 제 60 호 ('74.5.11) |

| | |
|--|---|
| <p>나. 사업의 시행자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청</p> <p>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 주소: 생략</p> <p>라. 공람기간 공고일로 부터 14일간</p> <p>마. 위치도 및 계획면도: 생략</p> <p>바. 토지 (건물) 표시 및 도면은 도 봉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 치 공람한다.</p> | <p align="center">◎서울특별시공고제 91 호</p> <p align="center">제 2 종전기공사업체영업정지처분</p> <p>전기공사업법 제 29조 제 2항 3호의 규정에 의거 제 2종 전기공사 업체 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하였기 전 기공사업법 제 42조 규정에 따라 이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p> <p align="right">1988.2.10. 서울특별시청</p> |
|--|---|

다 음

| 연허번호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행정처분사항 | 사 유 |
|---------|------|----------------------------|-----|-----------------------------|------------------------------------|
| 제 982 호 | 성원전기 |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과동 377-34 | 권기욱 | 영업정지 1개월 (’88.2.10-3.10) | 전기공사업법 제 5조 5항 및 동법 제 23조 위반 |

| | |
|--|---|
| <p align="center">◎서울특별시공고제 92 호</p> <p>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및관계도면공람</p> <p>1. 하수도법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 토목 30354-20166 호로 설치 인가된 공공하수도가 설치(연 결)가 완료되었기 하수도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15일간 일반 인에게 공고 및 공람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통지는 생략하고 이 공고로 가름한다.</p> <p align="right">1988.2.10. 서울특별시청</p> | <p>가. 사용개시연월일: 내역 참조</p> <p>나. 배수구역: 하수관망도 참조 : 서대문구청 토목과 비치 도면 생략</p> <p>다.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 위치 : 서대문구청 토목과 비치</p> <p>라.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합류식 또는 분류식의 구분 : 합류식</p> <p>마. 공람기간 ’88.2 ~ 2.29</p> <p>바. 사용개시 하수도내역 : 뒷면 참조</p> |
|--|---|

| 공 사 명 | 위 치 | 공사 개요 | 인가 번호 | 사용개시 년 월 일 | 배수구역 | 비고 |
|--|--------------------------------------|------------------------|----------|---------------|------------------|----|
| 신연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 연희동산 2-6~산 2-7 | D=450 m L=77.50 m | 27 | '87.12.20 | 홍재배수분구 | |
| 충정로 3가 143-9 암거개량외 2건 하수도공사 | 현저동 107, 충정로동 42, 126, 142 | D=350~900 m L=115 m | 28 | '87.12.15 | 현저배수분구 아현배수분구 | |
| 천연동 98의 21-98의 26외 4개소 하수도공사 | 영천동 69, 냉천동 78, 천연동 117 | D=300~600 L=166 | 29 | '87.12.30 | 현저 " | |
| 북아현 3동 1의 1037-1의 1502 하수도공사 | 북아현동 1의 1037~ 1의 1502 | D=450 L=50 | 30 | '87.12. 9 | 아현 " | |
| 홍은 1동 435의 10의 1개소외 1건 하수도공사 | 홍은동 437, 8 | D=300~800 L=168 | 31 | '87.11.12 | 홍은 2 " | |
| 홍은동 321, 남가좌동 225-71 남가좌동 237-156 하수도공사 | 남가좌동 237, 225, 홍은동 321 | D=300~450 L=135 | 32 | '87.11.30 | 남가좌 1, 2 " | |
| 북가좌동 144, 308 주변 하수도공사 | 북가좌동 144, 308 | D=450 L=120 | 33 | '87.11.30 | 북가좌 " | |
| 홍제 1동 312 주변의 2개소 하수도공사 | 홍제동 312, 267, 홍은동 15 | D=450 L=138 | 34 | '87.12.30 | 홍제 " 홍은 2 " | |
| 북아현동 1의 382~1의 628외 1건 하수도공사 | 북아현 1의 382~ 1의 628 | D=300~450 L=162.50 | 35 | '87.11.30 | 아현 " | |
| 북아현동 3의 71~3의 194외 3개소 하수도공사 | 북아현 1의 45~3의 41 북아현 3의 437~3의 536 | D=300~450 L=167.50 | 36 | '87.12.30 | 아현 " | |
| 상전동 7의 39~9의 3외 1개소 하수도공사 | 상전동 90의 14~58 외 43 | D=450~600 L=187.50 | 37 | '87.11.30 | 상전 " | |

표 1397 호

시

문

1988.2.10

42-31

| 공 사 명 | 위 치 | 공 사 개 요 | 인 가 번호 | 사용개시 년 월 일 | 배수구역 | 비 고 |
|--|--|-----------------------------|-----------|---------------|----------------|-----|
| 남가좌 2 동 356 의 1 ~ 367 의 2 간 외 1 개소 하수도공사 | 남가좌동 356 의 1 ~ 367 의 2 " 200 의 70 ~ 199 의 4 | D = 300 ~ 450 L = 149.50 | 38 | 87.11.10 | 남가좌 1 배수분구 | |
| 북가좌동 424 의 18 ~ 424 의 25 " 347 의 3 ~ 347 의 28 | 북가좌동 424 의 18 ~ 424 의 25 " 347 의 3 ~ 347 의 28 | D = 300 ~ 450 L = 295 | 39 | 87.11.30 | 북가좌 배수분구 | |
| 남가좌동 262 및 291 의 41 하수도공사 | 남가좌동 262 일대 " 291 의 41 일대 | D = 300 ~ 450 L = 377 | 40 | 87.11.30 | 남가좌 2 배수분구 | |
| 남가좌 2 동 345 의 1 ~ 346 의 24 하수도공사 | 남가좌동 345 의 1 ~ 346 의 24 | D = 450 L = 115 | 41 | 87.11.30 | " | |
| 홍제동 51 의 9 ~ 44 의 45 의 1 개소 하수도공사 | 홍제동 61 의 9 ~ 44-45 | D = 450 ~ 600 L = 105 | 42 | 87.11.30 | 홍제 배수분구 | |
| 남가좌 1 동 242 의 11 ~ 241 의 28 하수도공사 | 남가좌 1 동 242 의 11 ~ 241 의 28 | D = 350 ~ 450 L = 125 | 43 | 87.11.30 | 남가좌 1 배수분구 | |
| 연희동 537 의 72 ~ 537 의 70 하수도공사 | 연희동 537 의 72 ~ 537 의 70 | D = 300 ~ 450 L = 351 | 44 | 87.12.30 | 연희 배수분구 | |
| 마곡동 117 의 21 ~ 108 의 3 외 1 개소 하수도공사 | 마곡동 117 의 21 ~ 108 의 3 | D = 300 ~ 900 L = 147.50 | 45 | 87.11.30 | 냉천 배수분구 | |
| 백현교 ~ 홍제 3 교간 도로정비공사 | 홍제동 361-30 ~ 334-97 | D = 450 L = 207.50 | 46 | 87.12.31 | 홍제 배수분구 | |
| 현저동산 5 의 5 ~ 산 5 번지 외 1 건 도로정비공사 | 현저동산 5-5 증정로동 31 의 71 ~ 31 의 16 | D = 450 L = 110 | 47 | 87.12.31 | 아현, 현저 배수분구 | |

42-32 제 1397 호 시

년 1988.2.10

| 공 사 명 | 위 치 | 공사 개요 | 인가 번호 | 사용개시 년 월 일 | 배수구역 | 비고 |
|-----------------------------------|---|------------------------|----------|---------------|---------------|----|
| 현저동 101의 107.산 5번지구변 도로정비공사 | 현저동 101의 37 " 산5 | D= 450~1,000 L= 160 | 48 | 87.11.30 | 현저 배수분구 | |
| 연희동 520 주변의 2개소 도로정비공사 | 연희동 520의 63~520의 87 105의 16~187의 20 444의 100~444의 105 | D= 450 L= 75 | 49 | 87.11.30 | 연희 배수분구 | |
| 충정로 3가 3-193 도로정비공사 | 충정로 3가 3-193 | D= 450 L= 55 | 50 | 87.12.31 | 현저 배수분구 | |
| 북아현동 208-209 주변 도로정비공사 | 북아현 208.209 | D= 450 L= 180 | 51 | 87.11.30 | 아현 배수분구 | |
| 상천동 4의 1~5의 28 도로정비공사 | 상천동 4의 1~5의 28 | D= 450 L= 210 | 52 | 87.12.10 | 상천 배수분구 | |
| 홍은 3동 265의 323~277의 157 도로정비공사 | 홍은동 265의 323 ~ 277의 157 | D= 300 L= 65 | 53 | 87.11.30 | 홍은 배수분구 | |
| 연희 3동 317의 1~194의 50 도로정비공사 | 연희동 317의 1 ~ 194-50 | D= 450 L= 52.50 | 54 | 87.11.30 | 연희 배수분구 | |
| 홍제 4동 174의 4~174의 29 도로정비공사 | 홍제 4동 174의 4 ~ 174의 29 | D= 450 L= 82.50 | 55 | 87.11.30 | 홍제 배수분구 | |
| 홍은동 342의 2~356의 33 도로정비공사 | 홍은동 342의 2 ~ 356의 33 | D= 450 L= 115 | 56 | 87.11.30 | 홍은 배수분구 | |
| 남가좌동 289의 62~268의 33 도로정비공사 | 남가좌동 289의 62 ~ 268의 33 | D= 450 L= 105 | 57 | 87.11.30 | 남가좌 1 배수분구 | |
| 대천동 27 주변 도로정비공사 | 대천동 27 | D= 450 L= 127.50 | 58 | 87.11.30 | 대천 배수분구 | |

제 1397 호 시

제 1988.2.10

42-33

| 공 사 명 | 위 치 | 공 사 개 요 | 인 가 번호 | 사용개시 년 월 일 | 배수구역 | 비 고 |
|--------------------------------------|------------------------------|---------------------------|------------|---------------|----------------|-----|
| 남가좌동 329 의 35 ~ 346 의 24 도로정비공사 | 남가좌동 329 의 35 ~ 346 의 24 | D= 600 ~ 800 L= 207.50 | 59 | 87. 11. 28 | 남가좌 2 배수분구 | |
| 홍제동 312 의 99 ~ 312 의 165 도로정비공사 | 홍제동 312 의 99 ~ 312 의 165 | D= 450 L= 85 | 60 | 87. 11. 30 | 홍제 배수분구 | |
| 남가좌 2 동 350 의 9 ~ 64 의 67 도로정비공사 | 남가좌 2 동 350 의 9 ~ 64 의 67 | D= 450 ~ 600 L= 162 | 61 | 87. 11. 10 | 남가좌 2 배수분구 | |
| 남가좌동 268 의 17 ~ 258 의 90 도로정비공사 | 남가좌동 268 의 17 ~ 258 의 90 | D= 450 L= 50 | 62 | 87. 11. 15 | 남가좌 2 배수분구 | |
| 남가좌 1 동 275 의 2 ~ 275 의 29 노도정비공사 | 남가좌동 275 의 2 ~ 275 의 29 | D= 450 L= 54 | 63 | 87. 11. 10 | 남가좌 1 배수분구 | |
| 영천동 278 의 103, 충정로 3 가 227 도로정비공사 | 영천동 278 충정로 3 가 227 | D= 300 ~ 600 L= 162 | 64 | 87. 11. 30 | 천저, 아천 배수분구 | |
| 영천동 200 의 37 ~ 200 의 57 도로정비공사 | 영천동 200 의 37 ~ 200 의 57 | D= 450 L= 200.7 | 65 | 87. 11. 20 | 냉천 배수분구 | |
| 연희 2 동 83 의 12 ~ 200 의 72 도로정비공사 | 연희동 83 의 12 ~ 200 의 72 | D= 450 L= 93 | 66 | 87. 11. 15 | 연희 배수분구 | |
| 홍은동 195-7 의 5 필지 형질변경 | 홍은동 195-7 | D= 600 L= 62 | 비 판 리 정 | 87. 12. 30 | 홍은 2 배수분구 | |
| 홍은동 산 1-32 토지 형질변경 | 홍은동 산 1-32 | D= 450 L= 39 | " | 87. 10. 30 | 홍은 1 배수분구 | |
| 홍은 4-1 구역 주택개발 재개발사업 | 홍은동 산 1-59 | D= 300 L= 182 | " | 87. 10. 30 | 홍은 1 배수분구 | |
| 북가좌 1 교역수백개량재개발사업 | 북가좌 1 동 145-101 | D= 450 ~ 800 L= 531 | " | 87. 7. 20 | 북가좌 배수분구 | |

42-34

제 1397 호 시

보 1988. 2. 10

◎서울특별시공고제 94 호

도시계획사업시행 (도르) 공람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4 호 (83.1.13) 로 시설 결정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57 호 (83.2.1) 로 지적승인된 남쪽 길 주변 도로확장공사를 위한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한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한다.

3. 관세도서는 관악구청 기록부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8.2.10.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607-130 신림동 616-4 주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도로), 남쪽길확장공사
 다) 사업규모: B=20M, L=400M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관악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감일: 사업시행인가일로 부터 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토지 지목 및 소유권 권리명세: 각래
 사) 토지소유자의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제인의 주소, 성명: 이래
 아) 공람기간: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자) 기타사항: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상거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시기 바람.

토 지 조 서

| 연번 | 소재지 지번 | 지목 | 지적 면적 | 면적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 소유자 주소 성명 | |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
| | | | | | | 관계인 | 주소 성명 | |
| 1 | 신림동 607-149 | 대 | 156 | 156 | | 김동석 | 관악구신림동706-22 | |
| 2 | " 607-139 | 대 | 116 | 116 | | 김홍운 | 관악구신림동715-24 | |
| 3 | " 607-163 | 대 | 150 | 150 | | 남쪽개발사 농협중앙회 | 관악구신림동607-73 증구충경로1가75 | 근저당 |

| 연번 | 소재지 지번 | 지목 | 지적 면적 | 면적 | 입 실 제 이 용 상 황 | 소유자주소성명 | | 소유권이의의 권리명세 |
|----|---------------|----|----------|-----|---------------------------------|------------------|-------------------------------|----------------|
| | | | | | | 소유자주소성명 | 소유자주소성명 | |
| 4 | 신림동 607-50 | 도로 | 10 | 10 | | 김홍술 | 관악구신림동 716 | |
| 5 | " 607-147 | 대 | 5 | 5 | | 남북개발(주) 농협중앙회 | 관악구신림동 607-73 중구충정로 1가 75 | 근저당 |
| 6 | " 607-155 | 대 | 213 | 213 | | 남북개발(주) 농협중앙회 | 관악구신림동 607-73 중구충정로 1가 75 | 근저당 |
| 7 | " 607-166 | 대 | 18 | 18 | | 남북개발(주) 농협중앙회 | 관악구신림동 607-73 중구충정로 1가 75 | 근저당 |
| 8 | " 726-14 | 대 | 7 | 7 | | 김무성 | 관악구신림동 726-12 | |
| 9 | " 726-13 | 대 | 5 | 5 | | 김무성 | 관악구신림동 726-12 | |
| 10 | " 726-15 | 대 | 6 | 6 | | 유영준 한국주택은행 | 관악구신림동 726-1 중구대영로 1가 61-1 | 근저당 |
| 11 | " 725-74 | 대 | 84 | 84 | | 윤명규 | 관악구신림동 725-1 | |
| 12 | " 725-75 | 대 | 56 | 56 | | 윤명규 | 관악구신림동 725-1 | |

| 연번 | 소재지 지번 | 지목 | 지적 면적 | 권입 면적 | 실제 상환 | 소유자주소성명 | | 소유권면적의 관리명대 |
|----|---------------|----|----------|---|----------|-----------------------------|---|----------------|
| | | | | | | 관 | 인주소성명 | |
| 13 | 신림동 725-76 | 대 | 98 | 98 | | 박희만 서울신탁은행 | 관악구신림동 725-59 중구남대문로 2가 10-1 (영업2부) | 근치당 |
| 14 | 725-80 | 잡 | 32 | 32 | | 김상원 | 영등포구영등포동 577-12 | |
| 15 | 725-81 | 대 | 18 | 18 | | 황사미 | 서대문구갈현동 515-14 | |
| 16 | 725-54 | 잡 | 3 | 3 | | 김양희 | 관악구신림동 706-14 | |
| 17 | 725-79 | 대 | 4 | 4 | | 황응진 | 은평구갈현동 515-14 | |
| 18 | 616-9 | 대 | 26 | 26 중 154 398 26 중 155 398 26 중 79 398 | | 강순근 김기연 김동수 | 관악구봉천동 1642-12 영등포구신길동 9-130 | |
| 19 | 616-10 | 전 | 351 | 351 | | 이상은 | 관악구신림동 599 | |
| 20 | 614-28 | 대 | 18 | 18 | | 남쪽새마을 금고 새마을금고 연합회 | 관악구신림동 614-20 종로구송인동 1433-1 | 근치당 |
| 21 | 614-29 | 대 | 2 | 2 | | 남쪽새마을 금고 새마을금고 연합회 | 관악구신림동 614-20 종로구송인동 1433-1 | |
| 22 | 614-30 | 대 | 21 | 21 | | 노승만 | 인천서북구효성동 594-5 | |

| 연번 | 소재지 지번 | 지목 | 지적 (㎡)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 소유자주소성명 | | 소유권이외 관리명세 |
|----|--------------|----|-----------|-----|----------------|-----------------------------|---|---------------|
| | | | | | | 관제 | 인주소성명 | |
| 23 | 신림동 616-4 | 대 | 79 | 79 | | 이해순 | 영동포구신림동 188 | |
| 24 | " 597-143 | 도 | 20 | 20 | | 김상희 | 관악구신림동 700-16 | |
| 25 | " 701-7 | 대 | 26 | 26 | | 김정희 최병화 신림7동 새마을금고 | 관악구신림동 701-4 " " 668-2 " " 678-2 | 근적담 " " |
| 26 | " 700-70 | 대 | 83 | 83 | | 강석만 | 관악구신림동 623-3 | |
| 27 | " 700-71 | 도 | 54 | 54 | | 강희영 | 관악구신림동 717 | 가등기 |
| 28 | " 700-72 | 대 | 14 | 14 | | 유제섭 장한부 국상호 신용금고 | " " 300-54 동작구노량진동 256-55 중구남창동 46-11 (신촌지점) | 근적담 " " |
| 29 | " 700-74 | 대 | 139 | 139 | | 강석만 | 관악구신림동 623-3 | |
| 30 | " 700-75 | 대 | 84 | 84 | | 김용연 | 관악구신림동 646-321 | |
| 31 | " 700-76 | 대 | 88 | 88 | | 오창규 이경희 | 관악구신림동 700-47 도봉구수유4동 597-26 | 가알류 |
| 32 | " 700-55 | 대 | 21 | 21 | | 강석만 | 관악구신림동 623-3 | |
| 33 | " 700-59 | 도 | 40 | 40 | | 백석로 | 서대문구신분로2가 56 | |
| 34 | " 700-47 | 대 | 11 | 11 | | 오창규 이경희 | 관악구신림동 700-47 도봉구수유4동 597-26 | 가알류 |

물 건 조 서

| 일련 번호 | 소재지 지 번 | 물건의 종 류 | 구조 및 규 격 | 수 량 | 실적 상 환 | 소유자 주소 성명 | | 소유권이 의 권리명세 | 비 고 |
|----------|--------------|------------|--------------|--------------------|-----------|--|---|----------------|-------|
| | | | | | | 관 계 | 인 주 소 성 명 | | |
| 1 | 신림동 725-1 | 주 택 | 세멘트벽조 연화층 | 1 | | 윤 명 규 | 관악구신림동 725-1 | | |
| 2 | " 725-62 | 주택및 점 포 | 세멘트벽조 평육개 | 1층:16 2층:16 | | 윤 명 규 | 관악구신림동 725-62 | | |
| 3 | " 616-4 | " | 연화조평육 개 | 71 | | 이 해 순 | 영등포구신림동 188 | | |
| 4 | " 607-139 | " | " | 65 | | 김 흥 운 | 관악구신림동 715-24 | | 이등기 |
| 5 | " 607-104 | 점 포 | 세멘트벽조 평육개 | 1층:48.4 2층:36.6 | | 장 아 년 | 관악구신림동 706-22 | | " |
| 6 | " 701-4 | 주 택 | 세멘트벽 연화조 | 1층:11 상고: 2 | | 김 정 중 최 병 화 신림 7동 새 마을 금 고 | 관악구신림동 701-4 관악구신림동 658-2 관악구신림동 678-20 | | 근 처 당 |
| 7 | " 700-57 | " | 세멘트벽 연화조 | 1층:39 지 하: 9 | | 강 형 구 | 관악구신림동 700-37 | | 이등기 |
| 8 | " 700-54 | " | " | 9 | | 유 계 섭 장 헌 선 부국광호 신용금고 | 관악구신림동 700-54 동작구노량진동 256-56 중구남창동 46-11 (신촌지점) | | 근 처 당 |

| 일련 번호 | 소재지 지번 |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규격 | 수 량 | 실제 이용 상황 | 소유자 주소 성명 | | 소유권 의권변명세 | 비 고 |
|----------|---------------|------------|-------------|-------------------------|----------------|----------------|---------------------------------------|--------------|--------|
| | | | | | | 관계인 | 주소 성명 | | |
| 9 | 신림동 700-63 | 주 택 | 세면외급 연화조 | 1층:41 2층:41 지하:11 | | 김 용 연 | 관악구신림동 646-321 | | |
| 10 | " 700-47 | " | " | 1층:59 지하:18 | | 오 창 규 이 경 희 | 관악구신림동 700-47 도봉구수유4동 597-26 | 가압류 | |
| 11 | " 726-1 | 대문, 담 장 | | 1식 1.6×8 | | 유 영 훈 | 관악구신림동 726-1 | | |
| 12 | " 725-77 | 담 장 | | 2×3 | | 김 상 원 | 영등포구영등 포동577-12 | | |
| 13 | " 725-78 | " | | 2×7 | | 황 사 미 | 서대문구갈현동 515-14 | | |
| 14 | " 616-3 | " | | 2×10 | | 이 상 은 | 관악구신림동 599 | | |
| 15 | " 615-2 | " | | 2×10 | | 김 봉 근 | 관악구신림동 646-264 | | |
| 16 | " 615-3 | " | | 2×8 | | 김 봉 근 | 관악구신림동 646-264 | | |
| 17 | " 607-104 | 대 문 | | 1식 | | 장 아 년 | 관악구신림동 706-22 | | |
| 18 | " 701-7 | " | | 1식 | | 김 경 중 | 관악구신림동 701-4 | | |
| 19 | " 700-70 | 대문, 담 장 | | 1식 1.8×22 | | 강 형 구 | 관악구신림동 700-37 | | |

| 일련 번호 | 소재지 지 번 | 물건의 종 류 | 구조 및 규 격 | 수 량 | 실 제 상 황 | 소유가주소성명 | | 소유권이외 약관리명세 | 비고 |
|----------|---------------|------------|-------------|----------------|------------|---------|-----------------|----------------|----|
| | | | | | | 관계인주소성명 | | | |
| 20 | 신림동 709-74 | 철조방 | | 1 식 1.3×2.7 | | 강 석 단 | 관악구신림동 623-3 | | |
| 21 | " 700-75 | 대 문 담 장 | | 1 식 2×10.5 | | 김 용 연 | " 646-321 | | |
| 22 | " 700-76 | " | | 1 식 1.8×1.5 | | 오 창 규 | " 700-47 | | |
| 23 | " 607-104 | 영업권 | 에이원가구 | 1 식 | | 박 호 수 | " 607-104 | | |
| 24 | " 607-139 | " | 천우과학 공업사 | " | | 이 건 홍 | " 607-139 | | |
| 25 | " 757-26 | " | 성심치과 의원 | " | | 김 덕 수 | " 757-26 | | |
| 26 | " 725-62 | " | 래진상업 | " | | 김 은 중 | " 725-62 | | |
| 27 | " 725-62 | " | 영아미용실 | " | | 이 욱 희 | " 725-62 | | |
| 28 | " 725-62 | " | 호남천막사 | " | | 안 승 배 | " 725-62 | | |
| 29 | " 725-1 | " | 충남사 | " | | 강 술 규 | " 725-1 | | |
| 30 | " 616-4 | " | 제일사 | " | | 한 군 수 | " 616-4 | | |
| 31 | " 616-4 | " | 남쪽장 의사 | " | | 홍 복 화 | " 616-4 | | |

사

◎ 1988년 2월 11일

형 제 48호

| 성 명 | 발 행 사 랑 | 현 부 사 | 직 급 |
|-----|-------------------------------------|---------|---------|
| 김용석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견책에 처함. | 한강관리사업소 | 지방토목기사 |
| 백동원 | | 충남건설본부 | 지방토목기사보 |

공 지 사 함

- * 시보 게재 요청시 유의사항
 - 고사, 공고등의 문안은 경어사용 (예 : 공고한다. → 공고합니다.)
 - 시보 게재 원고는 글자가 잘 보이는 것으로 2부씩 송부
(특히 복사한 원고가 잘 보이지 않아 전화로 확인되는 등 업무에 지장이 있음)
 - 시보 게재 일자는 공보관에서 시보발간 업무 행정에 따라 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 주 1-2회 발간됨)